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소고

-부정당행위의 기준, 조사 및 제재유형을 중심으로-

홍 탁 균*

〈 目 次 〉

Ⅰ. 머리말
Ⅱ. 제재의 법적 근거
Ⅲ. 부정당행위의 5가지 유형
Ⅳ. 조사 및 제재의 진행
Ⅴ.제재의 유형 및 기준
Ⅵ. 맺는말

〔국문초록〕

2016년 기준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가에 대해 총 642억 달러에 이르는 원조를 공여하고 있다. 그 형태는 유무상 원조, 투자 참여, 사업 보증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세계은행의 원조, 투자, 보증 등의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개별 국내기업 차원에서 바라 볼 때 이들 사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비중은 만만치 않다. 유의할 점은 이들 사업에 참여할 때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은 자신이 원조·투자·보증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의 부정당행위 관련 조사 및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운용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특색으로는 우리나라의 부정당업자 제재보다 훨씬 장기간의 제재가 가능한 점,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후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나 합병·인수회사에 대해서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조사 및 제재절차의 특색으로는 자진신고 내지 조사협조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하는 점, 조사방해 자체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라는 점, 결정이 나기 전에 임시입찰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제재내용이 일반에 공개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금융기구들은 상호 협약을 통해서 한 기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 다른 기구도 더불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국제금융기구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Ⅰ. 머리말

2016년 9월 28일 소위 김영란법으로 약칭되는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각종 청탁과 금품수수와 관련된 새로운 규범적 기준이 제시되었다. 이 법률은 공무원, 교원, 언론종사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들에게 일정한 상한선을 넘는 금품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행위의 당사자 쌍방을 모두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기업 관련자가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제공을 금지하는데 표적을 둔 법으로서, 종래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기업활동의 상당부분을 억지하고 화훼업이나 요식업 등에 큰 타격을 가하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그렇지만 이 법은 한국 사회가 부패를 억제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장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대외개방형 경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 기업은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업활동을 펼쳐서 상대국의 경제적 후생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많은 수의 한국기업들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유럽개발은행 등이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 산재한 개발도상국가의 사회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원은 지난 세월 우리나라가 받았던 국제적 지원과 원조를 갚는 길이기도 하다. 이들 국제금융기구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즉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활동과 달리, 이들 사업에서는 국제금융기구가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공정성과 투명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한국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국제금융기관이 정립하여 운용하는 부패·담합 등의 부정당행위 관련 연성규범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추세를 주시하면서 국제적 기업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이해도와 법적 연구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이 글은 세계은행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부정당업자의 조사 및 제재에 관한 기본 사항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의 차이점, 우리나라의 제도 및 기업들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부당행위 제재의 법적 근거

세계은행 혹은 World Bank라는 용어는 세계은행그룹과 세계은행이라는 두 가지 용례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즉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IBRD'),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IFC),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이하 'ID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CA) 5개 기구를 총칭하여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이라고 하고, 이중 IBRD와 IDA를 좁은 의미의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 한다.[1] 세계은행은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산하의 금융기관으로서,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고 세계적으로 120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10,000명 이상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가에 여러 방식으로 원조를 하는데 2016년 한해에 합계 약 642억 달러의 원조·투자·보증을 제공하였다.

세계은행의 프로젝트는 피원조국가와 세계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 계약은 국가간의 조약에 준하는 차관협정의 모습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차주나 수익자, 응찰자. 공급자나 기타 프로젝트 관련자와 체결하는 개별적 계약에서 반부패 등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이를 계약의 조건 혹은 내용으로 삼는 방식을 취한다. 부정당행위 관련 구체적 기준은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규범적 구속력에 그 바탕을 두는 셈이며, 피원조국가와 체결된 조약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세계은행이 각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구사하는 부정당행위 관련 관행은 이미 정형적으로 축적되었고 그 결과 이를 해당 분야의 국제연성규범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세계은행은 특정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차주·수익자·응찰자·공급자·컨설턴트 등과 체결하는 개별적 계약에 "부정행위·부패행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직접 혹은 외부감사인(third party auditor)을 통해서 장부를 조사할 권리(right to access to bid and contract document) 및 제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관행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세계은행은 계약의 유형별로 반부패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직접 혹은 별지 등으로 인용하여 계약에 편입시키고 있는 것이다.[2]

---

1) 이하 편의상 World Bank Group과 World Bank 구별 없이 '세계은행'이라고 칭한다.

2) 이 때 전형적으로 채용되는 문귀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Standard Procurement Document for Non-Consulting Services(July, 2016)

세계은행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세계은행과 원조를 받는 국가 사이에도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므로 해당국가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와 세계은행이 체결한 계약은 '차관협정' 즉, 국가간 조약의 형태로 체결되어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 있었다. 그러나 조약도 그 본질이 국가간의 계약인 것이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의 법적 근거는 전반적으로 계약책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세계은행은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제도의 성격을 내부행정적(internal administrative) 혹은 준사법적(quasi-judicial)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국제금융기구들은 부정당업자 제재의 성격을 사업상 판단(business decision)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 법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공법상 '처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법(私法)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 거절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이다. 공법상 처분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경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 등에 의하여 제재절차에 많은 제한이 부가될 수 있을 것이나 사법상 행위로 보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3)]

한편, IBRD 협정[4)] 제7조에 의하여 IBRD 및 그 임직원에게는 각 회원국의 사법절

Section VI - Fraud and corruption

1.1 The Bank's Anti-Corruption Guidelines and this Annex apply with respect to procurement under Bank Investment Project Financing operations.

2.1 The Bank requires that Borrowers (including beneficiaries of Bank financing); bidders, consultants, contractors and suppliers; any sub-contractors, sub-consultants, service providers or suppliers; any agents (whether declared or not); and any of their personnel, observe the highest standard of ethics during the procurement process, selection and contract execution of Bank-financed contracts, and refrain from Fraud and Corruption.

2.2 To this end, the Bank (중간 생략)

d. Pursuant to the Bank's Anti-Corruption Guidelin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Bank's prevailing sanctions policies and procedures, may sanction a firm or an individual (중간 생략)

e. Requires that a clause be included in bidding/request for proposals documents and in contracts financed by a Bank loan, requiring (i) bidders, consultants, contractors, and suppliers, and their sub-contractors, sub-consultants, service providers, suppliers, agents, personnel, permit the Bank to inspect all accounts, records and other documents relating to the submission of bids and contract performance, and to have them audited by auditors appointed by the Bank.

3) Hans-Joachim Priess, "Questionable Assumptions: The Case for Updating the Suspension and Debarment Regimes at the Multinational Development Banks", 45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271 (2013), Chapter IV A.

차에 대하여 독립된 국가 내지 그 소속 외교관과 유사한 면책특권이 부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 또는 그 임직원은 회원국가가 다른 회원국가의 공적 통신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권한이나 다른 회원국가의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여행에 대한 편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세계은행의 재산과 문서에 대한 회원국 입법·사법기관의 압수수색이나 문서제출명령 등으로부터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임직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위치에서 각국을 드나들면서 제재사유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최근 캐나다 대법원은 세계은행 직원의 면책특권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였다.[5)]

Ⅲ. 부정당행위의 다섯가지 유형

현재 세계은행은 다양한 형태의 부정당행위를 다섯 가지 기준을 통해 수렴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당업자 관련 구체적 제재사유로 부를 수도 있다. 사기, 부패, 담합, 강압, 조사방해 등의 5가지 사유로 포섭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적 혹은 기타의 이익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고의로 상대방을 오인시키는 사기적 부정행위(fraud)이다.[6)] 제재사건의 약 75%가 이 사유로 발생하고, 입

4) 다자간 조약으로, 1955.경 최초 체결된 후 몇 차례 개정되었다.

5) World Bank Group v. Wallace, 2016 SCC 15, 〔2016〕 1 S.C.R 207. 이 사건에서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 조사기구인 Integrity Vice Presidency에 소속된 조사관은, 세계은행이 원조한 방글라데시의 파드마대교(Padma Multipurpose Bridge) 건설사업에서 건설감리 업무를 수주하려는 기업의 임직원이 방글라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그 정보를 캐나다 연방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과 공유하였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상당부분 이를 근거로 캐나다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를 조사하고 이들을 캐나다 법원에 기소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감청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세계은행에 관련문서를 제출할 것(production of document)과 세계은행 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subpoena)을 요구하였고 캐나다 하급심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대법원은 세계은행이 부여받고 있는 면책특권 제도의 연혁과 내용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러한 문서제출명령이나 증인신문은 세계은행이 회원국으로부터 부여받은 면책특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6) A 'fraudulent practice' is any act or omission, including misrepresentation, that knowingly or recklessly misleads, or attempts to mislead, a party to obtain financial or other benefit or to avoid an obligation. 제재 사유에 대한 정의는 Guidelines on Preventing and Combating Fraud and Corruption in Projects Financed by IBRD Loans and IDA Credits and Grants (15 October, 2006) Article 7에 기재되어 있다. 온라인 주소는 아래와 같다. 이하 부정당행위의 정의는 위 규정을 참조하였다.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RUSSIANFEDERATION/Resources/

찰시 시험이나 성능에 대한 보증서를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관련 서명을 조작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7)]

둘째, 상대방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안・교부・요구 또는 수령하는 부패행위(corruption)이다.[8)] 수주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술적 요구조건(technical specification) 과 같은 발주처의 내부정보를 얻는 대가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9)] 교부되는 경제적 이익은 그 형식에 제한이 없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을 경제적 이익제공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10)]

셋째, 상대방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포함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이 모의하는 부당공동행위(collusion)이다.[11)] 문언상으로는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한 담합 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한 모의행위 등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세계은행은 경쟁이 존재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담합행위에 한정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12)]

넷째, 상대방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이나 그의 재산을 해하거나 해하겠다고 협박하는 강압행위(coercion)이다.[13)]

다섯째, 부패행위・사기적 부정행위・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고의적으로 인멸하거나 위조 변조하거나 숨기거나, 조사와 관련된 진술을 하지 못하

---

ibRD_IDA_AnticorruptionGuidelines.pdf

7) Michael S. Diamant, Christopher W.H. Sullivan, Jason H. Smith, "Sanctionable Practices at the World Bank: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18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Business Law 985 (2016), Chapter II B.

8) A 'corrupt practice' is the offering, giving, receiving, or soliciting, directly or indirectly, or anything of value to influence improperly the actions of another party.

9) Michael S. Diamant, Christopher W.H. Sullivan, Jason H. Smith, 앞의 논문 Chapter II C.

10) Sanctions Board Decision No. 78, pp.53-54 (2015), Michael S. Diamant, Christopher W.H. Sullivan, Jason H. Smith, 앞의 논문 Chapter II B에서 재인용.

11) A 'collusive practice' is an arrangement between two or more parties designed to achieve an improper purpose, including to influence improperly the actions of another party.

12) Michael S. Diamant, Christopher W.H. Sullivan, Jason H. Smith, 앞의 논문 Chapter II D.

13) A 'coercive practice' is impairing or harming, or threatening to impair or harm, directly or indirectly, any party or the property of the party to influence improperly the actions of a party.

도록 관련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세계은행의 조사·감사를 중대하게 방해하기 위해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obstruction)이다.[14] 세계은행이 감사(audit)를 위해 사업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관련회사 담당자가 세계은행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사(procurement advisor)로부터 받은 이메일들을 삭제한 사안에서, 관련회사는 이메일 삭제로 인하여 세계은행의 감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Sanctions Board는 감사 직전에 이메일이 삭제되었다는 사정과 삭제된 이메일들 중 일부는 관련회사와 세계은행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사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세계은행의 감사를 중대하게 방해하였다(materially impede)고 판단하였다.[15]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한국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와 크게 다른 점이다.

실제로 세계은행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나 관련자 중에는 그러한 조사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 관련 제재의 특수한 측면이이나 조사제도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그 집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심을 평소 간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Ⅳ. 조사 및 제재의 진행

세계은행의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의 대상과 범위, 제제사유에 대한 조사, 제재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World Bank Sanctions Procedure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4.7.9. 최초로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현재 운용되고 있는 규정은 2012.4.15. 개정규정이다(이하 'Sanctions Procedures'라고만 표기함).[16]

---

14) An "obstructive practice" is (i) deliberately destroying, falsifying, altering, or concealing of evidence material to the investigation or making false statements to investigators in order to materially impede a Bank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a corrupt, fraudulent, coercive, or collusive practice; and/or threatening, harassing, or intimidating any party to prevent it from disclosing its knowledge of matters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 or from pursuing the investigation, or (ii) acts intended to materially impede the exercise of the Bank's contractual rights of audit or access to information.

15) Sanctions Board Decision No. 60, p.105 (2013), Michael S. Diamant, Christopher W.H. Sullivan, Jason H. Smith, 앞의 논문, Chapter II.에서 재인용.

16) Sanctions Procedures가 게시된 온라인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EXTOFFEVASUS/Resources/WBGSanctions_Pr

먼저 재재의 대상과 범위를 살펴보면,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부정당행위를 한 기업은 물론,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affiliates)[17], 그리고 해당 기업을 인수하거나 해당 기업과 합병한 기업에게도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18] 대규모 기업의 특정 부문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문에 대하여만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19] 물론 직접 행위자가 아님에도 제재의 대상이 된 특수관계자, 합병법인, 인수법인은 제재절차에서 제재대상 기업과 동일한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20]

조사 및 제재절차는 크게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세계은행의 Integrity Vice Presidency(이하 'INT')가 제재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둘째, Sanction and Debarment Officer(이하 'SDO')가 그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조사절차 개시통지 및 제재권고안의 제시를 하고 경우에 따라 임시입찰제한(Temporary Suspension)을 부과하며, 셋째, SDO의 제재권고안에 이의가 제기되면 심의체기구인 Sanction Board에 재판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제재가 확정된 이후 대상기업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세계은행의 Integrity Compliance Officer(이하 'ICO')가 모니터링을 한다.[21] 이들 절차를 요목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NT의 조사

INT는 세계은행의 원조·투자·보증 등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는 제보나 정보가 수집되면 사실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INT에는 약 90명의 조사, 포렌식 업무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고 세계은행 내외부에서 매년 수백여 건의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2015년의 경우 약 320건이 넘는 정보를 검토하여 약 99건에 대해서 공식조사를 개시하였고 해당 사건들과 관련된

---

ocedures_April2012_Final.pdf

17) 'affiliates'란 제재대상자를 지배(control)하거나 제재대상자에 의하여 지배(control)되는 회사나 개인을 의미한다.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 Sections 2.01(a), Article IX Section 9.04.(b).

18)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X Section 9.04.(c) Sanctions Precedure.

19)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X Section 9.04.(a).

20)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X Section 9.04.

21) 세계은행의 부정당업자 제제 제도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98)과 미국의 연방 조달규칙(U.S.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Hans-Joachim Priess, 앞의 논문, Chapter I. 김대인, 세계행정법과 국제기구, 「행정법연구」 제45호, 2016.6., 17면.

국가는 모두 86개국이었다고 보고되고 있다.[22] INT는 조사결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결과보고서(Statement of Accusations and Evidence)를 SDO에 송부하는데, INT는 제재대상기업에게 유리한 증거(exculpatory or mitigating evidence)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II Section 3.01.(b). 조사결과 보고서는 제재 사유, 기초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이 포함되므로 종종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문건이 된다. INT에서 조사를 개시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송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였다.[23] 여기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의 입증정도는 형사소송의 기준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은 아니고, 증거우위('more likely than not' or 'preponderance of evidence')이다.[24]

2. SDO의 검토 및 권고제재안 부과

SDO는 INT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자에게 제재절차개시통지서(Notice of Sanctions Proceedings)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INT가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와 SDO가 결정한 권고제재안이 첨부된다.[25] 이를 통보받은 기업은 30일 내에 SDO에게 제재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제재의 수위를 낮추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Explanation)을 제출할 수 있다. SDO는 제재대상 기업이 의견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제재안을 철회하거나 제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SDO가 제재를 철회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제재를 할 수 있다.[26] SDO에게 증거의 검토, 권고제재안의 부과권한을 부여한 것은, 협의체 기구인 Sanctions Board의 심사를 거치는 경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한다. 제재대상 기업이 제재절차개시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고제재안이 확정된다. 90일 이내에 Sanction Board에 서면 이의신청서(Response)를 제출하면 Sanction Board의 심의절차가 개시된다.

3. 임시입찰제한

22) Michael S. Diamant, Christopher W.H. Sullivan, Jason H. Smith, 앞의 논문, Chapter I.

23) Michael S. Diamant, Christopher W.H. Sullivan, Jason H. Smith, 앞의 논문, Chapter I.

24)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VIII Section 8.02.

25)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V Section 4.01.

26)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V Section 4.03.

임시입찰제한은 INT 조사단계에서 부과되는 경우와 SDO가 권고제재안을 부과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INT는 제재사유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1년 이내에 SDO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으로서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입찰제한을 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그때까지의 조사현황을 기재하여 SDO에게 임시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27]

SDO는 제재사유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제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적어도 2년이상의 기간동안 부정당업자 제재가 이루어질 사안인 경우 제재절차개시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이라도 재제사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임시입찰제한을 할 수 있다. INT의 신청에 의해 부과되는 임시입찰제한의 기간은 6개월이다. INT는 임시입찰제한 시작 후 5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조사진행 상황 및 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SDO에게 제출하여 임시입찰제한을 6개월 내에서 연장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입찰제한 기간 내에 INT가 조사결과보고서를 SDO에게 공식 송치하면, SD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시입찰제한이 계속된다. SDO가 스스로 임시입찰제한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면, SDO는 언제든지 임시입찰제한을 종료시킬 수 있다.[28]

다음으로, SDO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내용의 권고제재안을 부과하면, 그때부터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임시입찰제한이 시작된다. 임시입찰제한을 통보받은 제대대상자는 30일내에 SDO에게 그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증거(Explanation)를 제출할 수 있고, SDO는 제재대상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입찰제한을 철회할 수 있다.[29]

4. Sanctions Board의 심의와 결정

Sanctions Board는 세계은행 소속 3인과 외부인 4인으로 구성된다.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제재가 과중하다는 주장이 모두 가능하다. 제재대상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INT와 SDO에게 교부되고 INT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Sanctions Board에 의견서(Reply)를 제출할 수 있다. Sanctions Board의 허락이 있으면 제재대상자나 INT는 그 이후에도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30]

INT가 Sanctions Board에 제출한 증거 중 아직 제재대상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가 있으면, 해당 증거의 공개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 등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27)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I Section 2.01.(a)

28)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I Section 2.04.

29)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I Section 2.03., Article IV. Section 4.03.(a)

30)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V Section 5.01., Section 5.02.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자에게 증거가 공개된다. INT는 타인의 생명·신체·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Sanctions Board를 상대로 특정 증거를 제재대상자에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Sanctions Board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INT는 해당 증거의 제출을 철회하거나 제재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31]

제재대상자나 INT가 요청하는 경우, Sanctions Board가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hearing)가 열리지만 비공개이다. Sanctions Board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Sanctions Board가 질문을 하기 위하여 증인이 출석할 수 있다. 재판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전문증거나 서면증거도 Sanctions Board의 평가에 따라 증거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의뢰인-변호사 특권(attorney client privilege)은 인정된다.[32] Sanctions Board의 결정에 불복할 수는 없고, 개별 국가의 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5. 시효와 공개

세계은행의 Procure Guideline, Consultant Guideline에 근거한 제재의 경우 해당 계약이 이행된 후 10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다. 그 이외의 계약의 경우 제재사유가 되는 행위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다.[33] INT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리스트는 데이터베이스화[34] 되어 세계은행 내부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 SDO의 제재 중 이의신청되지 않은 것, Sanctions Board의 제재, Settlement에 따른 제재는, 일반에게 공개된다.[35] 세계은행은 INT 혹은 제재대상 기업이 SDO나 Sanctions Board에 제출한 정보를 다른 국제금융기구, 국제기구, 개별국가의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유가 부적절한 민감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수령기관으로부터 비밀유지 확약을 받고 있다.[36]

---

31)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V Section 5.04.(c)

32)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VI Section 6.01. 내지 Article VII Section 7.03.

33)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V Section 4.01.(d)

34) Compliance Risk Profile Database(CRPD)라는 명칭으로 세계은행 내부에서 공유된다.

35)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X Section 10.01. 세계은행 홈페이지에서 Sanctions Board의 많은 결정문을 열람할 수 있다.

36)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X Section 10.03. 내지 Section 10.04.

V. 제재의 유형과 기준

1. 제재의 유형

세계은행이 각종 부패 및 부정당행위에 연루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의 유형은 경고, 조건부 불제재, 단순제재, 제재후 사후심사, 영구제재, 피해변상조치 등 모두 6가지이다. 자진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재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고, 제재 수위에 대하여 대상기업과 세계은행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제재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다. 이들 제재의 유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1. 경고

경고(Letter of Reprimand)는 가장 경미한 사안에 대한 재제조치로서, 해당 기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한 A기업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B기업이 A기업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B기업에게 경고장이 발송되는 것과 같다.[37]

1.2. 조건부 불제재

조건부 불제재(Conditional Non-Debarment) 조치는 제재대상 기업이 이미 충분한 compliance program을 실사하고 있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세계은행이 부과하는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정행위를 한 A기업의 특수관계자(A기업을 지배하는 회사)가 A기업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특수관계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요구된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ICO가 심사한다. 요구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가 이루어진다.[38]

---

37)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X Section 9.01.(a). World Bank Sanctioning Guidelines(이하 'Sanctioning Guidelines') II D에도 관련규정이 있다. Sanctioning Guidelines는 다음 사이트 참조.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EXTOFFEVASUS/Resources/WorldBankSanctioningGuidelines.pdf

38)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X Section 9.01.(b), Sanctioning Guidelines II C.

1.3. 단순 제재

제재대상 기업이 이미 충분한 compliance program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예상키 어려운 임직원의 일탈행위로 위반이 발생하였고, 해당 임직원이 해고되었기 때문에 주로 1년 이하의 단기간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재기간의 종료 후 별도의 심사없이 바로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39] 이 조치를 단순제재(Debarment without Conditional Release)라고 한다.

1.4. 제재 후 사후심사

제재 후 사후심사(Debarment with Conditional Release)란 제재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3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3년 후 제재대상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과된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확인 경우 제재를 종료하는 것이다.[40] 제재 후 사후심사에서 부과되는 조건은 compliance program 운영, 피해발생시 원상회복,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이다.[41]

1.5. 영구 제재

영구제재(Permanent Debarment)는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조치이다. 주로 개인, 비공개회사, 페이퍼 컴퍼니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데, 이들이 향후에도 반부패 및 부정당행위 관련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에 대해 부과되는 강력한 조치이다.[42]

1.6. 피해변상조치

피해변상조치(Restitution)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과 손해를 입은 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구제조치이다. 다만 이 조치는 지금까지 부과된 사례가 없다.[43]

---

39)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X Section 9.01.(c), Sanctioning Guidelines II B.

40) Sanctioning Guidelines I.

41)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X Section 9.01.(d), Sanctioning Guidelines II A.

42) Sanctioning Guidelines II. E.

43)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X Section 9.01.(e), Sanctioning Guidelines II F.

2. 자진신고, 합의, ICO의 모니터링

2.1. 자진신고

자진신고(Voluntary Disclosure)는 조사개시 전에 위반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세계은행이 제재를 시행하지 않고 자진신고한 기업의 명칭을 비공개하는 조치이다. 위반행위를 한 기업은 통상 향후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compliance program을 시행하면서 더불어 자진신고를 행한다. 자진신고로 제재조치를 면제받거나 기타 혜택을 입은 기업이 사후에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이에 대해 향후 10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2.2. 합의

Sanctions Board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제재대상 기업과 세계은행은 제재수준에 대하여 합의(Settlement)할 수 있다. INT와 제재대상 기업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심사절차 중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SDO는 심사절차를 최장 90일까지 중지할 수 있다. 합의가 되면, INT와 제재대상 기업은 서명된 합의서를 SDO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한다. 합의서가 제출되면 SDO 혹은 Sanctions Board에서의 심사절차는 중지되고, SDO는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제재 기준(Sanctioning Guideline)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합의를 승인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44]

2.3. ICO의 모니터링

제재가 결정되면 ICO는 제재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compliance program 운영 내지 강화 등 부과조건의 이행방법에 대하여 권고를 한다.[45] 조건을 이행하는 방법은 ICO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reporting), 제3자 모니터 선임, 회사 장부에 대한 외부감사 허용 등이다. 대상 기업은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심사가 예정된 시점으로부터 120일 이전까지 조건이행 심사신청(Application)을 해야 한다. 조건이행 심사신청서에는 compliance program 운영, 피해발생시 원상회복,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취한 징계 등의 조치, 제재기간 중 확인된 다른 부정행위,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기구나 국가기관으로부터

44)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XI Section 11.01 내지 Section 11.04.

45)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X Section 9.03.

제재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한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46] ICO는 위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개시하며, ICO는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의 회계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재 후 사후심사에서 대상 기업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ICO가 판단하면, ICO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재를 연장시킬 수 있고, 그 경우 연장된 기간 종료 전에 대상 기업은 다시 조건이행 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조건이행에 대한 ICO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대상기업은, 30일 이내에 Sanctions Board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Sanctions Board는 90일 이내에 ICO의 심사가 적정한지를 결정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ICO가 '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는지' 여부이다.[47]

3. 제재의 기준과 가중 감경사유

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SDO나 Sanctions Board는 제재기준(Sanctioning Guideline)을 바탕으로 제재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고려하여 제재의 유형과 내용을 결정한다.

제재를 가중하는 사유로는, 행위의 중대성, 피해의 중대성, 조사방해, 반복행위 등이 있다.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는 반복행위,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위(관여자나 관여기업의 숫자, 다국적으로 이루어진 행위, 장기간 이루어진 행위 등을 말한다), 회사 고위직의 관여, 공무원이나 세계은행 직원의 가담 등이 있다.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제재기간을 1년 내지 5년을 가중한다. 그 다음으로,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에 손해를 야기하면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될 때에도 1년 내지 5년을 가중한다. 조사방해는 중요한 증거의 인멸이나 변경, 허위진술, 관련자들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거나 금전으로 회유한 경우, 세계은행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48] 이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년 내지 3년을 가중한다. 마지막으로 반복행위 즉, 과거에도 위반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10년을 가중할 수 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부당공동행위와 부패행위를 모두 한 경우와 같이 복수의 제재사유가 있거나 혹은 여러 사업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두 제재기간을 단순합산 할 수도 있고, 가중사유로 이를 고려할 수도 있다.

제재의 감경사유로는, 가담정도 경미, 자발적 시정, 조사 협조[49] 등이 있다. 가담정

46)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X Section 9.03.(c)

47)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IX Section 9.03.(e)

48) Sanctioning Guidelines IV.

49) INT에게 진실한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광범위한 자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INT와 공유한 경우, 조사 초기에 부정행위를 자인한 경우, 조사기간 중 자발적으로 세계은

도 경미란 부정당행위에 대해 부수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회사의 고위직이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하는 바, 이 때에는 제재의 수준을 25%까지 감경할 수 있다.[50] 자발적 시정이란 부패 및 부정당행위의 자발적 중지, 관련자에 대한 내부징계, compliance program의 실시, 부정당행위 결과의 원상회복 혹은 이로 인한 피해배상이 있으면 제재 수준을 50%까지 감경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감경도 가능하다

Ⅵ. 맺는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은행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제도는 미국의 1998년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과 미국의 연방 조달규칙(U.S.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반부패 및 부정행위 관련 미국의 국내정책이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청렴성 심사에도 원용되어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되는 바는 반부패 및 부정행위 척결과 관련하여 국제금융기구 사이의 협력과 공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이하 'AfDB'),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EBRD'),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IDB'),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이하 'EIB'), 국제통화기금(IMF)은 2006. 2.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금융기구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제금융기구 반부패 테스크포스(Joint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Anti-corruption Task Force, 이하 'IFI Task Force')를 결성하고, 2006. 9. 부패방지를 위한 각 기구들의 규정과 제도를 일치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51] 나아가서 AfDB, ADB, EBRD, IDB와 세계은행은 2010. 4. 9. '협약에 참가한 국제금융기구 중 어느 하나의 기구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면 다른 기구도 이를 받아들여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의

행 관련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경우 등에는 33%까지 감경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 이상 감경할 수도 있다. Sanctioning Guidelines V.

50) Sanctioning Guidelines V.

51) 합의 내용은 'Uniform Framework for Preventing and Combating Fraud and Corruption' 이라는 제목으로 문건화되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제재사유를 부패행위, 사기적 부정행위, 강요행위, 부당공동행위의 4가지로 통일하고자 한다는 것, 둘째 조사담당자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거나 입증의 정도를 증거우위(more probable than not)로 하는 것과 같은 조사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협약(Agreement for Mutual Enforcement of Debarment Decisions)을 체결하였다.[52][53] 이에 따라 어느 기구가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를 다른 기구에서도 받아들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54] 다만 각 국제금융기구들은 자체적인 고려나 법적 고려(institutional or legal consideration)를 하여 다른 국제금융기구에서 한 제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이를 협약 참가 국제금융기구들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55]

우리나라는 대외개방형 경제를 가지고 있고, 국내 주요기업은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시행이 시사하듯이, 공정성과 반부패의 요구는 국내에서도 강력하게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활동에 있어 오랫동안 효율성의 척도가 지배하였다면, 이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의 기준이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척도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은행이 원조·투자·보증하는 사업에 관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반부패 및 부당행위 관련 기준을 선도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이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여 세계 각국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자체 조사를 하는 점,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진신고 내지 조사협조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큰 점, 세계은행과 제재수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는 점, 세계은행이 제정한 관련

---

52) 여기서 '받아들여서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는 그러한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실체적 검토·심리 없이 동일한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Stephen S. Zimmermann, Frank A. Fariello Jr., "Coordinating the Fight against Fraud and Corruption: Agreement on Cross-Debarment among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World Bank Legal Review Vol 3, (2012), p.197. 한편 EIB는 이 협약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EIB의 부정당업자 제재는 향후 EU법원이나 EU기관에서 재판이나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Stephen S. Zimmermann, Frank A. Fariello Jr., 앞의 논문, p195. EIB가 협약에 참가하는 경우 협약에 참가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시행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EIB가 그대로 받아들여 제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EIB의 부정당업자 제재가 EU법원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 협약에 참가한 국제금융기구 전체의 신뢰도나 위상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였던 것으로 보인다.

53) 다만 어떤 제재가 다른 국제금융기구들에게도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제재가 1) 2006. 9. IFI Task Force에서 합의한 4가지 제재사유에 의한 것일 것, 2)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3) 1년을 초과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일 것, 4) 해당 국제금융기구가 본 협약을 받아들여 시행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것, 5) 제재사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한 후 10년 이내에 이루어졌을 것, 6) 국가기관 내지 다른 국제기구가 한 제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취한 제재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Agreement for Mutual Enforcement of Debarment Decisions, Article 4.

54) Sanctions Procedures Article XII Section 12.01 내지 Section 12.03.은 다른 국제금융기구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세계은행이 받아들여 적용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55)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tephen S. Zimmermann, Frank A. Fariello Jr., 앞의 논문, p.202.

규정이 자주 변동되는 점 등 세계은행 제재의 특성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제도와는 달리 장기간은 물론 심지어 영구적인 제재가 가능하고,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후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고, 제재조치에 대해 법원을 통한 재심사가 불가능하고, 직접 행위자가 아닌 특수관계자나 제재대상 기업을 합병·인수한 회사도 같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등 제재의 수준과 대상이 엄격하고 광범위하다는 점도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조사방해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세계은행이 각국 수사기관들과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정 원, 공공조달계약법1, 2, 법률문화원, 2016.

김대인,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법제의 현황과 과제”, 「공법연구」 제36집, 한국공법학회, 2008. 6.

_____, “미국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6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5. 4.

_____, “EU법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연구”, 「공법연구」 제45집, 한국공법학회, 2017. 2.

_____, “세계행정법과 국제기구”, 「행정법연구」 제4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6.

이하윤, “세계은행에서의 부정당업자제재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8.

Hans-Joachim Priess, “Questionable Assumptions: The Case for Updating the Suspension and Debarment Regimes at the Multinational Development Banks”, 45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271 (2013)

Frank A. Fariello, Jr. Conrad C. Daly, “Coordinating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mong MDB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anctions”, 45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253 (2013)

Michael S. Diamant, Christopher W.H. Sullivan, Jason H. Smith, “Sanctionable Practices at the World Bank: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18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Business Law 985 (2016)

Stephen S. Zimmermann & Frank A. Fariello Jr., “Coordinating the Fight against Fraud and Corruption: Agreement on Cross-Debarment among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World Bank Legal Review Vol 3, (2012).

Christopher R. Yukins, “Cross-Debarment: A Stakeholder Analysis”, 45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219 (2013)

Christine Anderson, “Sanction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he Missing Links in Natural Resource Anti-Corruption Efforts”, 48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79 (2017)

Pascale Hélène Dubois,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Tools to Combat Fraud & Corruption: a Comparison of US Suspension and

Debarment with the World Bank's Sanctions System",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5 (2012)

Roman Majtan, "The Self-Cleaning Dilemma: Reconciling Competing Objectives of Procurement Process", 45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291 (2013)

Elizabeth Lin Forder, "The World Bank's Sanction System as an Example", 106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Proceedings 122 (2012)

Paul Sarl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Transnational Anti-Corruption Regime: A Call for Regulation of the World Bank's Lending Practices", 45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293 (2014)

Lucinda A. Low, Sarah R. Lamoree, John London, "The 'Demand Side' of Transnational Bribery and Corruption: Why Leveling the Playing Field on the Supply Side Isn't Enough", 84 Fordham Law Review 563

〈Abstract〉

A Study on the World Bank Sanctions System

Tak-Kyun Hong

World Bank Group has its own sanctions system. It is reinforcing its resources to eradicate corruption and improper practices in relation to its projects. Many Korean companies try to expand their business opportunities in public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ere has not been many researches among Korean legal profession on the World Bank sanctions system, nor have Korean companies been well informed of the recent sanctions trend in World Bank.

This article introduces the landscape of World Bank sanctions system and cross-debarment of MDBs. It analyse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Korean debarment system and that of World Bank. Unlike Korean system, obstruction of investigation is an independent sanctionable practice. The period of debarment is substantially longer in World Bank sanctions, and companies sometimes have to receive following monitor and clearance from World Bank before sanctions are lifted. Voluntary disclosure and cooperation with investigation give substantial benefit to the subject companies. Settlement with World Bank can also be an important option.

Closely related companies such as parent, subsidiary, or company which acquired or merged with the subject company can also be sanctioned. Judicial review by national court is not an option. Korean compan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se major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World Bank's sanctions regime when doing business in developing countries.

♤ 주제어(Key Words)

세계은행, 반부패, 부정당행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제재
world bank, anti-corruption, undue practices, debarment, sanction, bidding procedure

논문투고일자 : 2018년 6월 15일
심사의뢰일자 : 2018년 6월 18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6월 27일
DOI : 10.24886/BLR.2018.6.30.2.139